

2026년도 1분기

# 자체 감사결과 보고

2026. 4.

감사위원회

# 1. 도로사업소 기관운영 감사

## 1. 감사 배경 및 목적

- 경제 및 문화활동의 필수요소인 도로의 중추적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 도로 기반시설의 신뢰성 확보와 시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감사 실시

### ※ 감사개요

- ▶ 감사대상 : 성동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 ▶ 기간·범위 : '25.9.4. ~ 10. 1.(20일) / '22. 1. 1.이후 현재까지 업무
  - \* 실지감사 前 유관기관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 관련자료에 대한 사전분석으로 감사전략 도출
- ▶ 감사인원 : 감사2팀장 등 5명(토목분야 공익감사단 1명 별도)
  - \* 공익감사단 역할 : 도로건설 및 시설유지 등 전반적인 사항 점검

## 2. 분야별 감사 중점사항

- ① **건설안전** : 시설물 유지보수, 교량 등 복구공사 적정성 체계 등
  - 도로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 공사의 품질관리 실태 확인
- ② **산업재해**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 등
  - 유해·위험요인·개선절차, 도로 시설물 정기점검 이력 및 보수 실적
- ③ **재정인력** : 도로 이용 불편 민원처리 및 준공기한 등 계약절차
  - 인재(人災) 오류 존치, 도로시설물 복구공사 관련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3. 감사성과 총괄

(단위: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시정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환수·추급	기타						
7	-	-	-	-	-	-	1	5 (-)	-	-	1	-	

##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 7건 [주의 5, 시정 1, 통보 1]

(2026. 3. 31. 기준)

연번	감사분야	관련기관	지적내용	처분 종류	이행현황
1	건설안전	재난안전실 성동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도로시설물 관리체계 개선 필요	통보	이행중
2	산업재해	성동도로사업소	도로시설물 공사 하자검사 이행 철저	주의	이행완료
3		성동도로사업소	차량사고 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 부적정	주의	이행완료
4		강서도로사업소	차량사고 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 부적정	주의	이행중
5		강서도로사업소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관리 소홀	시정, 주의	이행중
6		재정인력	강서도로사업소	계약변경 절차 이행 부적정	주의

## 2. 서울시50플러스재단 종합감사

### 1. 감사배경 및 목적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사업추진 실태와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의 적정 개선(시정)안을 마련하여 정책 성과를 제고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추진 내용

- 감사대상: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평생교육국
- 감사기간: 2025. 8. 11. ~ 9. 15. (기간 중 20일)
- 감사인원: 공공감사3팀장 등 4명
- 감사범위: 2022.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 전반

### 3. 감사 중점사항

- 중장년층 대상 채용기업 발굴 및 일자리 연계, 직업전환 역량 교육, 캠퍼스 시설 운영 등 주요 현안사업 점검
- 은퇴 전후 중장년층 시민 복리증진 향상 노력 활동 점검
- 소극행정, 민원 방치·소홀 사례 및 언론 등 외부 의혹 제기사항 확인
- 성과목표 달성 관련 장애요인 제거, 적극행정 등 모범(우수) 사례 발굴

### 4. 감사성과 총괄

(단위: 건, 천원, 명)

총건수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시정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모범 사례 (인원)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환수·추급	기타						
19	- (5)	-	-	1 (1)	-	-	-	-	10 (4)	-	-	9	-

##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처분요구 사항 일람표 : 19건 [주의 10, 통보 9]

(2026. 3. 31. 기준)

연번	제목	대상기관	처분종류	이행현황
1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사업 운영 개선	50플러스재단	통보	이행완료
2	일자리 연계 직무훈련 운영 개선	50플러스재단	주의 통보	이행완료
3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참여자 일연계 향상 방안 마련	50플러스재단	통보	이행중
4	취업컨설팅 운영 관리 개선	50플러스재단	주의 통보	이행중
5	40대 특화 직업전환 훈련 성과관리 운영 미흡	50플러스재단	통보	이행완료
6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강사 운영 미흡	50플러스재단	통보	이행중
7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산정 오류개선	50플러스재단	주의	이행중
8	지원시설 사용료 산정 및 대관시설 관리 운영 개선	평생교육국, 50플러스재단	주의2	이행중
9	물품관리 소홀 및 체계적 개선	50플러스재단	통보	이행중
10	보조사업 수입·지출없는 예산편성·결산	평생교육국, 50플러스재단	주의2 통보2	이행중
11	적격심사 점수미달 업체 낙찰자 결정	50플러스재단	주의	이행중
12	계약상 경비정산 항목에 없는 비용 추가 지급 등	50플러스재단	주의	이행완료
13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미준수	50플러스재단	주의	이행중

### 3.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종합감사

#### 1. 감사 배경 및 목적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 제고와 기관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종합감사 실시

#### 2. 추진 내용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 평생교육국
- 감사기간 : 2025. 8. 11.~ 9. 12.(기간 중 20일)
- 감사인원 : 공공감사 2팀장 등 5명
- 감사범위 : 2022. 7월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 전반

#### 3. 감사 중점 사항

- 시민대학 평생교육 운영, 광역 평생학습 체계 강화, 평생교육 약자 지원, 시민대학 시설 관리 등 주요 현안 사업 점검
- 소극행정 및 민원처리 지연 점검
- 언론, 시의회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 점검
- 예산·회계 등 일반분야 적정성 확인 등

#### 4. 감사성과 총괄

(단위: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시정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환수·추급	기타						
24	7	6,443	-	-	2	2 (6,443)	-	2	10 (7)	-	-	12	-

#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처분요구 사항 일람표 : 24건 [시정 2, 주의 10, 통보 12]

(2026. 3. 31. 기준)

연번	제목	대상기관	처분종류	이행현황
1	시민대학 강사 재위촉에 따른 평가기준 보완 및 개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통보	완료
2	서울 리테크 사업 운영·관리 개선 필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통보	진행
3	연구사업 운영 과정 개선 필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주의, 통보	완료
4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운영 개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통보	진행
5	디지털 문해학습장 지원사업 철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주의, 통보	완료
6	시민대학 캠퍼스 운영·관리 체계 개선 필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시 평생교육국	주의, 통보	진행
7	☆☆☆캠퍼스 시설 운영·관리 철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시 평생교육국	주의, 통보	진행
8	시민대학 캠퍼스 안전관리 철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주의, 통보	진행
9	건설공사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철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주의, 통보	완료
10	자기주도 평생학습날 운영방식 개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통보	완료
11	출장명령 기준 준수 및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개정 필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주의, 통보	완료
12	연차유급휴가 과다 산정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시정, 통보	진행
13	예산 운용 및 집행 철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시정	완료
14	교육훈련비 집행 철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주의	완료
15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철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주의	진행
16	개인정보문서 관리 철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주의	완료



## □ 감사결과 총평

○ 금번 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국 인사과와 인력개발과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음

- 2021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퇴직예정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 관행 개선을 권고하고, 이에 대하여 지자체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권고함.

○ 감사결과,

① 퇴직예정자(가족 포함)에 대한 일률적 국내·외 연수 및 고가의 기념품(고가의 금제품, 황금열쇠 등) 등 제공 여부 : **적정함**

① 감사대상기간(2022년 하반기 ~ 현재) 중 퇴직예정자(가족 포함)를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 지원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바, 지급 내역 없는 것으로 확인됨.

② 다만, 퇴직예정자에 대한 격려금(1인 500,000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률적 지원 금지’ 권고를 반영하여 공적심사를 거쳐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됨.

② 국내·외 연수, 기념금품 등 일률적 지원근거 삭제 : **조례 개정 완료**

-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후생복지 관련 조례 등에 국내외 연수 및 기념품 등 ‘일률적 지원’ 근거를 삭제하도록 권고하였고,

- 이에 따라 행정국(인력개발과)은 2025. 9. 29.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일률적 지원이 아닌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됨.

종 전	개정후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p> <p>5.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p>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p> <p>5.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및 <u>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u> 정년·명예 퇴직공무원의 격려금 지급</p>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도 “객관적 공적심의 절차를 거쳐 집행” 하도록 규정을 신설('22.1.1.)

**③ 퇴직예정자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 공개 여부 : 미공개 → 공개토록 통보**

-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여 퇴직예정자에 대한 집행내역 공개 관련 규정 신설.(2022. 1.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1조(집행현황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장기근속·퇴직(예정)자 집행내역

가. 대상: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집행내역

나. 항목: 지원근거, 인원(가족 포함), 집행일시, 집행액, 집행내역(연수국가, 기념품 품목 등), 지원대상 선발기준

다. 주기와 시기: 매 반기

- 행정국은, 퇴직예정자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위 훈령에 따른 집행내역을 공개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됨.(소관부서 관련규정 미인지)
- 규정 문언상 “~ 노력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으나,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집행내역 공개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하였음.**

##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2026. 3. 31. 기준)

연번	대상기관 (부서명)	처분요구 제목	처분 종류	조치사항	비고
1	행정국 (인사과)	정년·퇴직(예정)자에 대한 지원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통보	- 시 홈페이지에 2025년 하반기 정년· 명예퇴직자 격려금 집행내역을 공개 (2026. 1. 15.) ※ 향후 반기마다 정년·명예퇴직자 격려금 집행내역 공개 예정	완료

# 5.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등 재배정 사업 운영실태 특정감사

## 1. 감사 배경 및 목적

- 국민여가 및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사회적 관심도 증대에 따라 시 공원 보수정비 등 현장 위주 시민 체감분야 사전 예방적 감사 필요
- 자치구 재배정 사업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공사 시행 적정 여부 등 검토 필요
- 민선8기 주요 사업 시정 성과 제고와 사업 걸림돌 제거

## 2. 추진내용

- 대상기관 : 정원도시국(다과·나과·카과), 25개 자치구, 공원여가센터
- 감사기간 : 2025. 4. 9.(수) ~ 5. 29.(목) (기간 중 27일)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등 6명(공익감사단 3명 참여)
- 감사범위 : 공원조성 공사 및 시설물 설치 계약 등 운영 실태 전반
  - 생활밀착형 공원·책심터·사계절 꽃길 조성사업,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 2022.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 3. 감사 중점사항

- 공원조성 공사 준공 및 계약 분야, 재배정 예산 집행 분야 업무 적정성
- 공원시설 안전관리 및 운영 분야 업무 적정성, 법령 및 절차 준수 여부

##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시정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환수·추급	기타						
64	12	-	-	1 (1)	-	-	-	-	40 (11)	-	-	24	-

※ 현지조치 6건은 처분 건수에서 제외

## □ 감사 총평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등 재배정 사업에 대한 운영실태 전반 감사를 통해 사업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공사시행 적정 여부, 공원 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해 2025.4.9.부터 2025.5.29.까지 감사한 결과,

■ 정원도시국은 생활밀착형 공원조성을 위해 시 소유 공원 설치 및 관리를 위임한 공원관리청(공원여가센터, 자치구 등)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생활 밀착형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 공원여가센터, 자치구 등은 재배정 예산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을 통해 산자락 훼손지 및 폐공간 등 공원 기능이 상실된 공간, 재해 및 안전사고 우려 지역에 산림복원 및 대상지별 특성과 이용 현황을 반영한 특색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었으나,

● ①일부 공사 과정에서 준공내역(도면)과 다르게 시공되는 등 부적정하게 시공된 사항 및 ②공원 조성 과정에서 취지에 맞지 않는 시설물 설치·운영 ③공유재산(공원) 관리 미흡 등의 사례가 확인되었음

■ 공원관리청(자치구)은 공원조성계획 입안, 공원 설치·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심사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재배정 예산 집행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 일부 ①공원조성계획과 다르게 공원을 조성하거나, ②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공사, 물품 구매 등에 재배정 예산이 적합하게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하고 업무관련자에 대해서는 비위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하여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 64건 [주의 40, 통보 24]

(2026. 3. 31. 기준)

연번	분야	제 목	대상 부서(기관)	조치(안)	이행현황
1	공사 계약 및 준공	☆☆근린공원 조성공사 준공업무 부적정	서대문구, 정원도시국	주의,통보	이행중
2		●●● ●●지구 등 공원 조성공사 준공업무 부적정	관악구	주의,통보	이행완료
3		▲▲근린공원 조성공사 준공업무 부적정	구로구	주의,통보	이행완료
4		▣▣▣근린공원 등 조성공사 준공업무 부적정	노원구	주의,통보	이행완료
5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구매 부적정	강동구, 강서구, 광진구, 북부공원,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주의	이행완료
6		특정제품 선정 절차 미이행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성북구, 은평구, 종량구	주의	이행완료
7		물품(화분) 제조·구매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서부공원	주의	이행완료
8	재배정 예산집행	공원조성계획 결정 사항과 다르게 공원 조성	정원도시국	통보	이행중
			노원구	주의,통보	
9		재배정 예산 집행 부적정	정원도시국	주의,통보	이행완료
			노원구, 종량구, 송파구	주의	
10	안전관리 및 운영	공원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 시설물 설치·운영	정원도시국	통보	이행완료
			종량구	주의,통보	
11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정원도시국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은평구, 종량구	통보 주의,통보	이행중
12	법령 및 절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업무처리 미흡	구로구, 동부공원, 성북구	통보	이행중
13		책심터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업무 미흡	정원도시국 성북구	주의,통보 주의	이행완료

## 6. 서울역사박물관 기관운영 종합감사

### 1. 감사 배경 및 목적

- 2016년 종합감사 이후 장기 미수감, 금번 감사를 통해 기관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기관의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 필요
- 책임운영기관(2008.지정)으로서의 업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마련 및 효율성 제고 필요

###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서울역사박물관 (산하 분관 포함)
- 감사기간 : 2025. 9. 9. ~ 2025. 9. 30. (기간 중 16일)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등 3명 (공익감사단 2명 별도)
- 감사범위 : 2022.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 3. 감사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적용범위) 및 제3조 제1호(종합감사)
- 2025년 서울시 연간 감사계획 통보(감사담당관-1588, '25.1.24.)

### □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시정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환수·추급	기타						
14	-	-	-	-	-	-	-	7	-	-	7	-	

## □ 감사 총평

- 금번 박물관 기관운영 종합감사에서는 기관의 고유업무인 박물관자료 관리와 다수 시민이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시민불편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채용·복무·시설관리 등 기관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였음
- 감사 결과,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비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기관의 고유업무 및 시민불편과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이 확인되었고, 주요 감사성과는 다음과 같음
  - ① 유물관리 등 박물관 고유업무 관련,
    - 일부 소장자료가 중복으로 통계에 반영되거나, 특정 범주의 소장자료를 통계에 반영하지 않는 등 소장자료 통계가 실제와 다소 다른 경우가 확인되어 통계 반영 기준 확립이 필요하고,
    - 최근 수집한 소장자료의 경우 감사 종료 후 신속히 정규 등록하여 효율적인 유물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② 시민불편사항 개선 분야 관련,
    - 박물관 본/분관에 대해 촬영신청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승인기준 및 절차 마련이 필요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 접근성 개선을 통해 보행약자의 박물관 접근성 제고가 필요
  - ③ 일반행정(인사·복무, 시설관리 등) 관련,
    - 기간제근로자 등 비공무원 채용공고에 우대요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던 문제점이 확인되는 한편,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운영 부적정, CCTV 운영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 준수 미흡 등이 확인됨
- 이러한 감사성과에 대해 관행적인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업무처리 미흡 등의 사례는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함

#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 14건 [주의 7, 통보 7]

(2026. 3. 31. 기준)

연번	감사분야	감 사 성 과	조치(안)	이행여부
1	박물관 고유업무	박물관 유물 등 소장자료 관리 개선 필요 등	주 의 2 · 통 보 2	이 행 완 료
2	시민 불편사항 개선	부설주차장 운영 및 진출입로 보행자 안전 개선 필요	통 보	이 행 완 료
3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운영 개선	통 보	이 행 완 료
4		박물관 촬영 승인 등에 관한 기준·절차 등 개선	통보(시정완료)	이 행 완 료
5	일반행정	채용공고문 기재사항 관련 업무 개선 필요	통 보	이 행 완 료
6		유연근무제 복무관리 미흡	주 의 요 구	이 행 완 료
7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지연 등	주 의 요 구	이 행 완 료
8		외부강의등 신고업무 처리 부적정	주 의 요 구	이 행 완 료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부적정	주의요구·통보	이 행 완 료
10		부설주차장 사용허가 조건 이행 부적정	주 의 요 구	이 행 완 료

# 7. 2024년 일상감사 의견 이행실태 등 점검

## 1. 점검 배경 및 목적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12조(일상감사 관리)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 점검을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추진 내용

- 점검기간 : 2025. 9.15. ~ 2025.10.31.(기간 중 29일)

- 점검대상

- 1) 2024년 일상감사 시정·보완 의견이 제시된 591개 사업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구분	합계	계약업무	보조사업	위탁사업	안전관리계획
점검대상 사업	591개	469개	59개	47개	16개
감사의견(시정·보완)	1,872건	1,353건	218건	210건	91건

- 2) 2024년 각 부서에서 추진한 16,677개 사업 중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 점검

구분	합계	계약업무	보조사업	위탁사업
점검대상	16,677개	16,198개	126개	353개

- 점검인원 : 일상감사팀장 등 4명

## 3. 점검성과 총괄

(단위: 건, 천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 계 (인원)	시정(금액)			시정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 계	환수·추급	기 타						
4	-	-	-	-	-	-	-	2 (-)	-	-	2	-	

## □ 점검 총평

□ 2024년 일상감사를 실시한 834개 사업 중 시정·보완 등 일상감사 의견이 제시된 591개 사업에 대한 감사의견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 제안요청서 수정 등 보완을 요구한 591개 사업 중 577개 사업은 감사의견을 수용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4개 사업은 감사의견을 반영하였으나 계약예규 등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업무 추진 과정의 부주의 등으로 일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1) 협상에 의한 계약 정성평가 시 위원들이 평가 최저점을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기준을 미조치(2개 사업)

2)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에 직접경비 정산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채 공고하여 관련 기준 적용이 미흡(1개 사업)

3)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결과를 서울시 계약마당에 미공개하거나 평가위원 명단을 익명 처리하여 공개(11개 사업)

- 감사의견을 고의로 불이행한 사례는 없었으며, 조치 미흡 사례 또한 위법·부당한 행위로 이어지거나 예산 낭비, 손해 발생, 특정 업체 특혜 등과 같은 잘못된 결과로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2024년도 추진된 계약, 민간위탁,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을 점검한 결과,

○ 2024년 1~12월 기간 동안 처리된 계약업무(16,198개), 민간위탁(353개), 보조사업(126개)을 대상으로 일상감사 의뢰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계약업무 중 12개 사업(1인견적 수의계약)은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고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3개 사업은 계약 관련 법령과 불일치한 사례가 있었음

1) 계약법령에서 정한 공사 분할발주 금지 규정을 위반(2개 사업)

2) 수의계약 사유와 불일치함에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추진(1개 사업)

○ 일상감사를 미의뢰한 사례는 대부분 담당자가 일상감사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미의뢰 사업 중 위법·부당한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는 없었고, 공사 추진 과정에서 청사 안전 등을 고려한 사유나 저연차 직원의 계약법령 이해 부족 등으로 소명되었음

- 사업담당자 소명 결과, 부당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상감사를 고의로 회피할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미의뢰된 사업 또한 위법·부당한 행위나 예산 낭비, 손해 발생, 특정 업체 특혜 등과 같은 잘못된 결과로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 점검결과 이행 미흡 내역

### ○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 분야

연 번	집행부서	사업명	이행미흡 내역
1	가담당관	☑☑☑ 개발사업 세부 실행전략 마련 용역	정성평가 최저점을 배점한도의 60% 미만으로 부여
2	나과	X X X ♠♠♠	
3	다부	◇◇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직접경비 정산 사항 누락
4	라과	2025년 ♠♠♠ 운영 대행 용역	제안서 평가결과 미공개
5	마과	◆◆◆ 활성화 사업 기획·운영 용역	
6	바과	○○○ 제작 용역	
7	사센터	☞☞☞ 실태조사 용역	
8	아과	□□□ 운영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공개방법 미흡
9	자담당관	☒☒☒ 대행용역	
10	차과	□□□ 기획 운영	
11		□□□ 축제	
12	카과	▮▮▮ 운영 대행	
13	타과	2025 ▮▮▮▮	
14	파과	▨▨▨ 선정	

○ 일상감사 미의뢰 점검 분야

연번	기관(부서)	사업명	지적사항
1	가과	◆◆◆ 구매	일상감사 미의뢰
2	나과	◆◆◆ 검토 용역	
3		⊙⊙⊙ 구축 용역	
4	다과	■ ■ ■ ■ 장비 고장 수리	
5	라시험소	■ ■ ■ 구매 계약 의뢰	
6	마과	□ □ □ □ 환경개선 정비 공사	
7	바과	▣ ▣ ▣ 시설 정비공사 시행	
8	사과	▣ ▣ ▣ 제작구매	
9	아과	2024년 ■ ■ ■ ■ 사업 시행	
10	자과	● ● ● 환경개선공사	1. 일상감사 미의뢰 2. 분할발주 금지 위반
11		○ ○ ○ 환경개선 정비공사	
12	차센터	2024년 ◆ ◆ ◆ 고도화사업 설치공사	1. 일상감사 미의뢰 2. 수의계약 사유 부적정

# □ 점검분야별 지적사항

## 1.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 이행실태 분야

###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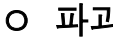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3. 평가결과의 공개에 따르면,
  -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 점수를 공개하여야 하고,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의 실명이 포함된 명단은 공개해야 함
  - 가과 등 7개 부서에서는 ‘2024년 ■■■ 운영 용역’, ‘△△△ 운영 대행 용역’ 등 6개 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공개의 취지에 맞게 실명이 포함된 평가 위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나’, ‘지00, 조00’와 같이 익명 처리하여 공개하였고,
  - 나과 등 4개 부서에서는 ‘2025년 ♠♠♠ 운영대행 용역’, ‘♡♡♡ 활성화 사업 기획·운영 용역’ 등 4개 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도 평가 결과를 서울계약마당에 공개하지 않았음

### 조치할 사항(안)

- 가과장, 나담당관, 다과장, 라센터장, 마과장, 바교장, 사과장, 아과장, 자과장, 차센터장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의 실명이 포함된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일상감사 점검결과 확인된 미흡 사항에 대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조치

## 나

### 제안서 정성평가 실시 미흡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및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각 평가항목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함
- 카담당관에서는 ‘ 실행전략 마련 용역’ 사업에 대하여 ‘정성적 평가 시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하도록 할 것’이라는 감사의견을 통보받아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입찰 공고하였으나,
  - 실제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 안내가 미흡하여 평가위원 3명이 일부 평가항목에서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미만으로 정성평가 점수를 부여하였음
- 파과에서는 ‘2025년 ’ 사업에 대하여 ‘정성적 평가 시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하도록 할 것’이라는 감사의견을 통보받아 이를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입찰 공고하였으나,
  - 실제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 안내가 미흡하여 평가위원 2명이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미만으로 정성평가 점수를 부여하였음
- 다만, 이로 인해 협상 순위의 변경은 없었음

### 조치할 사항(안)

- 카담당관, 파과장은
  - 향후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상감사 점검결과와 제안서 평가 절차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조치

## 다 직접경비 정산 규정 반영 미흡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직접경비)에 따르면,
  -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 비용으로 하고, 계약 시 당사자간 계약문서 및 과업 지시서에 직접경비에 대하여 추후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함을 명시하여야 함
  - 하본부에서는 ‘●●●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에 대하여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하고 계약 시 당사자 간 계약문서 및 과업 지시서에 직접경비에 대하여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함을 명시” 하도록 감사의견을 통보받아 과업내용서에 이를 반영하여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으나,
    - 실제 공고 시 과업내용서에는 해당 내용을 누락하여 공고하였음
  - 다만, 점검일 현재 직접경비 정산 절차는 아직 이행되지 않았으며,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직접경비를 정산할 예정임

### 조치할 사항(안)

- 하본부장은
  - 향후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 시 직접경비 정산 내용이 과업내용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상감사 점검결과 및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조치

## 2. 일상감사 미의뢰 점검 분야

### **가** 통합발주 가능한 공사를 분리발주하여 1인견적 수의계약 체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 집행부서의 장은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전에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따르면,
  -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으며, 예산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2호 나목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됨
  - **가사업소는 [표 1]와 같이 \*공사내용이 동일하여 통합발주가 가능한 본관 3층 화장실, 4층 화장실 개선 공사에 대하여,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분할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해당 공사를 사회적기업과의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가 되도록 공사량과 시기를 분리하여 발주함으로써 분할계약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수의계약 체결 전 일상감사를 받지 아니하였음**

[표 1]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계약 현황

사업명	소요예산	계약일자	*공사내용	계약상대자
본관 4층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44,550천원	2024.5.30.	가설공사, 철거공사, 배관설치, 위생기구 설치, 수장공사, 타일공사	A(주)
본관 3층 화장실 환경개선 정비공사	45,837천원	2024.8.23.	가설공사, 철거공사, 배관설치, 위생기구 설치, 수장공사, 타일공사	(주)B

## 조치할 사항(안)

### ○ 가소장은

- 단일 공사계약을 분리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부서가 일상감사를 미의뢰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주의, 통보)

## 나

### 경쟁계약이 가능한 사업을 1인견적 수의계약 체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 집행부서의 장은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전에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타목에 따르면,
  -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을 경우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감사원 공공계약실무가이드’에 따르면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은 물품과 호응된다” 라고 해석하고 있음
  
- 나센터는 2024. 8. ‘2024년 ●●●설치공사’ 를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면서, 동 사업이 공사임에도 물품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사유를 적용하였고, 계약상대자의 자격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경쟁이 가능한 사업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사전에 일상감사를 받지 아니하였음

### 조치할 사항(안)

- 나소장은
  - 경쟁계약이 가능한 사업을 1인견적 수의계약 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부서가 일상감사를 미의뢰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주의, 통보)

## 다 1인견적 수의계약 일상감사 미의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 집행부서의 장은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체결 전에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여야 하는데도 아래 [표 2]와 같이 강서도로사업소 등 8개 기관(부서)는 일상감사를 미의뢰하고 사업을 추진함
- 다사업소는 (표2, 연번1)과 같이 ‘●●●보수공사 관급자재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일상감사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추진하여 사전에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할 기회를 상실하였음
  - 다만, 점검기간 중 위 사업 내용과 수의계약 적용 근거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혁신제품 구매를 사유로 수의계약을 적용한 점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라과는 (표2, 연번2, 3)과 같이 ‘■■■■ 조사 및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 과 ‘■■■■ 건축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일상감사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이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추진하여 사전에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할 기회를 상실하였음
  - 다만, 점검기간 중 위 사업 내용과 수의계약 근거 규정의 부합 여부를 검토한 결과, 2024. 1. 17. 성산대교 본교에서 주요 부재 손상이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수의계약 추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마과는 (표2, 연번4)와 같이 ‘■■■■ 장비 고장 수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일상감사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에 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추진하여 사전에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할 기회를 상실하였음

- 다만, 점검기간 중 위 사업 내용과 수의계약 근거 규정의 부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계약상대자가 독점으로 공급이 가능한 부품 및 수리서비스에 해당하여 실질적 경쟁이 불가능하였던 점이 확인되므로, 동 수의계약 추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바과**는 (표2, 연번5)와 같이 ‘■■■■■■■■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일상감사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에 앞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추진하여 사전에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할 기회를 상실하였음

- 다만, 점검기간 중 위 사업 내용과 수의계약 근거 규정의 부합 여부를 검토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한우확인시험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특허를 보유한 독점 공급 대상에 해당함이 확인되어, 동 수의계약을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사과**는 (표2, 연번6)과 같이 ‘○○○ 정비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일상감사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에 앞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추진하여 사전에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할 기회를 상실하였음

- 다만, 점검기간 중 위 사업 내용과 수의계약 근거 규정의 부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계약상대자가 사회적기업으로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에 해당함이 확인되어, 동 수의계약 추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아과**는 (표2, 연번7)과 같이 ‘◎◎◎ 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일상감사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에 앞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사전에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할 기회를 상실하였음

- 다만, 점검기간 중 위 사업 내용과 수의계약 근거 규정의 부합 여부를 검토한 결과, 2024. 11. 28. 폭설에 따른 피해 복구에 대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동 수의계약 추진을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자과는 (표2, 연번8)과 같이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일상감사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에 앞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추진하여 사전에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할 기회를 상실하였음
  - 다만, 점검기간 중 위 사업 내용과 수의계약 근거 규정의 부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계약상대자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확인되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수의계약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차과는 (표2, 연번9)와 같이 ‘2024년 ■■■■ 시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일상감사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에 앞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사전에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할 기회를 상실하였음
  - 다만, 점검기간 중 위 사업 내용과 수의계약 근거 규정의 부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계약상대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확인되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수의계약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표 2]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 계약 현황

연번	발주 부서	사업명	계약 종류	계약 방법	계약 일자	계약금액	계약 상대자	수의계약 사유
1	가과	♡♡♡ 구매	물품	1인견적 수의계약	2024. 6.20.	157백만원	(주)A	혁신제품
2	나과	◎◎◎ 검토 용역	용역	1인견적 수의계약	2024. 1.26.	117백만원	(주)B	긴급한 재난
3		◆◆◆ 구축 용역	용역	1인견적 수의계약	2024. 1.25.	142백만원	(주)C	긴급한 재난
4	다과	▣▣▣ 장비 고장 수리	물품	1인견적 수의계약	2024. 5.8.	30백만원	(주)D	생산자 등 1인
5	라시험소	▨▨▨ 구매 계약 의뢰	물품	1인견적 수의계약	2024. 2.28.	52백만원	(주)F	특허제품
6	마과	▩▩▩ 정비 공사	공사	1인견적 수의계약	2024. 10.18.	29백만원	J주식회사	사회적기업
7	바과	○○○ 정비공사 시행	공사	1인견적 수의계약	2024. 12.30.	47백만원	K주식회사	긴급한 재난
8	사과	◇◇◇ 제작구매	물품	1인견적 수의계약	2024. 9.5.	28백만원	주식회사 L	중증장애인생산물
9	아과	2024년 ♣♣♣ 사업 시행	공사	1인견적 수의계약	2024. 8.7.	25백만원	M주식회사	자치단체사업을 위탁이 가능한 자

**조치할 사항(안)**

- 가과장, 나과장, 다과장, 라소장, 마과장, 바과장, 사과장, 아과장은
  - 향후 동일한 미의뢰 사업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상감사 규정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조치

# 8. 캠퍼스타운사업 운영실태 특정감사

---

## 1. 감사 배경 및 목적

- 캠퍼스타운 사업의 추진 실태와 관리·운영을 점검하여 문제점 개선을 통한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시정신뢰도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감사 실시

## 2. 감사 개요

- 감사대상 : 경제실(▲▲▲▲과)  
자치구(A구 가과, B구 나과, C구 다과)  
대학 3개소(♠♠대, ♠♠대, ♡♡대), 민간위탁시설(□□□□센터)
- 감사기간 : '25. 9. 23.(화) ~ '25. 10. 30.(목)(기간 중 19일)  
▶ 감사 착수 전 사업부서 면담 등 사전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감사전략 수립
- 감사범위 : '22. 1. 1.~ 감사일 현재까지
- 감사인원 : 감사3팀장 등 5명  
※ 공익감사단(회계·노무사) 별도 : 회계, 인사·복무 전반적 사항 점검

## 3. 감사 중점사항

- ① **사업 운영** : 효율적 사업 운영 체계 구축 및 실효성 확보
  - 체계적 사업관리를 위한 운영기준 적정성 및 사업 주체별 협업체계 점검
  - 성과평가 체계의 객관성 및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적정성
- ② **보조금 집행** : 관련 법령 준수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 보조사업자(대학) 및 보조금수령자(입주기업) 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 여부
  - 지방계약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집행절차 준수 및 증빙서류 적정성
- ③ **위탁시설 관리** : 수탁업무 이행실태 및 운영 적정 여부
  - 위·수탁 협약사항 준수 여부 및 지도·감독 취약분야 집중 점검
  - 입주기업 공모·선정 절차의 공정성, 공유재산 관리(전대 등)의 적정성

#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 감사결과 총괄(안)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시정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21	-	-	-	-	-	-	-	1	9			11	

※ 현지 조치사항 1건 제외

##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 21건 [주의 9, 시정 1, 통보 11]

(2026. 3. 31. 기준)

연번	감사분야	감사성과 (대상기관)	조치(안)	이행현황
1	사업 운영	체계적 사업관리를 위한 사업 운영기준등 개선 필요	통 보	이행 중
2		창업활동 지원시설(공유주방등)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통 보	이행 중
3		성과평가 지표 설정시기 및 예비창업자 성과평가 개선 필요	통 보 ( 2 )	이행 중
4		♡♡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 창업지원시설 운영·관리 미흡	주 의	이행 중
5		창업경진대회 평가 및 관리비 수입금 집행 부적정	주 의	이행 중
6		캠퍼스타운사업 공유재산 관리 소홀	주 의 ( 3 )	이행 중
7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지연 등 사업 일정 미준수	통 보 ( 2 )	이행 중
8	보조금 집행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입주기업 관리를 위한 통합 DB 구축 필요	시정·통보	이행 중
9		창업지원금 집행 관리 부적정 및 운영지침 개선 필요	통 보	이행 중
10		하자검사 미실시 등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 의	이행 중
11		물품 구입 및 관리 업무 소홀	주의(3)·통보(1)	이행 중
12	위탁 시설 관리	□□□□ 입주기업 사용료 산정등 부적정	통 보	이행 중
13		□□□□ 특정기업에 대한 조건부 사용허가 부적정	통 보	이행 중